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- 607호

「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」 창업도시 모집공고

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완화하고,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**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**를 추진하고자,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**광역자치단체(시·도)**를 모집공고 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개요 〉

◈ **(추진배경) 국가 단위**의 **우수**한 **창업 생태계**에도 **불구**, **수도권 -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**의 **양극화**가 **심화**되고 있으며, **지역 인구감소** 등으로 인해 **지역 혁신 인프라** 등 지역의 **창업 기반 약화**

○ **(추진목적) 국가균형발전**을 고려하여 **창업도시**를 **선정**하고, **중앙정부**와 **지방정부**의 **협력**을 통한 **창업도시**를 **조성**하여, **지역별 특색**을 **기반**으로 한 **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** 추진

- **(정책목표)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도시 5곳 이상** 창출

◈ **(추진개요) 중앙정부**(중기부 등)에서 **선정**된 **창업도시**에 **창업지원 역량**(사업·예산)을 **집중 공급**하고, **지방정부**는 **지역 내 혁신자원**을 **집중**하여 **지역 특색 기반**의 **창업도시 조성 전략 추진**

〈 창업도시의 개념 〉

창업 혁신자원(인재, 기술, 자본 등)이 집적되어, 창업 활동·성장이 지속되는 거점도시 기반 창업 생태계

❶ **(창업도시 지정) 지역 창업 혁신자원**(기술인재, 자본 등) **보유 수준**, **창업 생태계 규모·성숙도·잠재력** 등을 **기반**으로 **창업도시**를 **조성**할 **광역자치단체**(시·도) 선정

*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2028년까지 기본 지정기간을 부여하고, 별도 심의 후 2030년까지 추가 지정

❷ **(지원역량 공급) 중앙정부**는 **선정**된 **창업도시**에 **창업 생태계 강화**를 **목표**로 한 **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전략 수립·운영**을 **지원**하기 위해, **창업지원 역량**(사업·예산)을 **집중 공급**

❸ **(추진전략 수립) 지방정부**는 **중앙정부**에서 **공급**한 **자원**(사업·예산)과 함께, **지역 내 자원**(기관, 사업, 예산 등)을 **투입**하여, **지역 특색**을 **기반**으로 한 **창업도시 조성전략**을 **수립**

❹ **(지역 생태계 육성) 지방정부**는 **중앙·지방정부**의 **자원**을 **활용**하여 **창업도시 조성전략**을 **추진**하여, **지역 소재·이전 창업기업 육성** 및 **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** 추진

◈ **(지정현황) 과학기술원**이 **소재**하여 **기술인재**가 **지속 양성**되는 **4개 광역시 우선 지정** ('26년 4월)

* ❶ 대구광역시, ❷ 대전광역시, ❸ 울산광역시, ❹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〈 창업도시 모집공고 요약 〉

○ **모집개요** : **4극 3특***을 **기반**으로 **창업도시 조성**을 **희망**하는 **광역자치단체**를 **모집**하여, **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가능 지역**을 선별

* 5극 3특 중 수도권은 제외하여, 4극 3특 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

○ **신청대상** : 광역자치단체 **10곳**

○ **신청요건**

구분		주요 내용
1 대표·협력도시	개요	· 권역 기초자치단체 중 대표·협력도시와 대표도시 내 중심구역 지정
	요건	·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(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)
2 추진단 구성	개요	·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할 지역별 추진단 구성
	요건	· 최소 15개 이상 (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)
3 지방재원 확보	개요	· 지역이전 지원금,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및 과업 재원 확보·투입
	요건	· 총 6.4억원 (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,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.4억원)
4 전담조직 확보	개요	· 운영기관(창조경제혁신센터)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
	요건	·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(참여율 100%) 7인 이상 확보

○ **선정규모** : 광역자치단체 **6곳**

신청대상 (가나다 순)	선정(안)
· 1)강원특별자치도, 2)경상남도, 3)경상북도, 4)부산광역시, 5)세종특별자치시, 6)전남광주통합특별시*, 7)전북특별자치도, 8)제주특별자치도, 9)충청남도, 10)충청북도	6곳

*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(북·동·서·남·광산구) 및 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(대표도시 등)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○ **지원내용** : **4년간, 600억원 내외**의 **직접 지원 예산** 공급

* 연간 150억원 규모로, 창업기업 지원금 110억원, 프로그램 운영비 40억원 내외

** 기타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10여개 이상의 사업을 연계공급하여, 직접 지원과 연계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예정 (지역별 최대지원 규모 상이)

○ **신청기간** : **'26년 10월 23일(금) ~ 11월 30일(월), 15:00까지**

○ **평가방법** : **2단계**(서류평가 → 현장평가)의 **평가**를 통해 **각 광역자치단체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**과 **가능성**을 **비교 검증**

○ **주요일정(안)** : **모집공고**(10월) → **접수마감**(11월) → **서류·현장평가**(12월) → **선정확정**('27년 1월) 및 **전략발표회 개최**('27년 2월)

1 모집 개요

□ **(모집내용)**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(시·도)를 모집하여, 지역특색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 선별

○ 세부대상 : 4극(충청·호남·대경·동남권)과 3특(강원·전북·제주) 내 10개 광역자치단체(시·도)를 대상으로 모집·선정

□ **(모집유형)** 지역의 수요·특성에 따라, [1]딥테크형과 [2]로컬x테크형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(유형에 따른 평가트랙 구분 없음)

〈 창업도시 유형 현황 〉

구분	딥테크 창업도시			로컬 x 테크 창업도시		
개요	성장엔진과 연계한 딥테크 분야 중점 지원·육성			성장엔진과 연계한 딥테크 분야와 지역특색 기반 로컬 분야 통합 지원		
중점분야	중점분야❶	중점분야❷	중점분야❸	중점분야❶	중점분야❷	중점분야❸
	성장엔진 연계	성장엔진 연계	성장엔진 연계	성장엔진 연계	성장엔진 연계	로컬창업 연계
	성장엔진 및 신산업(27개) 중심			성장엔진 및 신산업(27개), 로컬(7개) 통합		
예산배분	공급 예산을 성장엔진(신산업) 중심으로 투입			공급 예산의 30% 내외는 로컬 분야에 투입		

* (로컬 7개 분야) [1]지역가치, [2]로컬푸드, [3]지역기반제조, [4]지역특화관광, [5]거점 브랜드, [6]디지털문화체험, [7]자연친화활동 (단,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)

□ **(선정규모)**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6곳

신청대상 (가나다 순)	선정(안)
· [1]강원특별자치도, [2]경상남도, [3]경상북도, [4]부산광역시, [5]세종특별자치시, [6]전남광주통합특별시*, [7]전북특별자치도, [8]제주특별자치도, [9]충청남도, [10]충청북도	6곳

* '전남광주통합특별시'는 기존 광주광역시([1]북구, [2]동구, [3]서구, [4]남구, [5]광산구), [6]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(대표·협력도시)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** 단, 신청·접수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후 필요 시 선정규모 변경 가능

□ **(협약기간)** '28년 12월 29일(금)까지 (약 2년의 기본협약 기간 부여)

* 기본협약 종료('28년말) 후,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의 실적, 성과 등 성과평가를 통해 협약연장(+2년, ~'30년 12월) 검토 (협약 연장 시, 최대 4년의 협약기간 부여)

2 신청요건

〈 창업도시 신청요건 현황 〉

구분		주요 내용
1 대표·협력도시	개요	· 권역 기초자치단체 중 대표·협력도시와 대표도시 내 중심구역 지정
	요건	·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(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)
2 추진단 구성	개요	·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할 지역별 추진단 구성
	요건	· 최소 15개 이상 (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)
3 지방재원 확보	개요	· 지역이전 지원금,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및 과업 재원 확보·투입
	요건	· 총 6.4억원 (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,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.4억원)
4 전담조직 확보	개요	· 운영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
	요건	·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(참여율 100%) 7인 이상 확보

1 **(대표·협력도시) 기초자치단체 협력**을 통해, **권역 내 대표도시**와 **협력도시**를 **지정**하여, **광역 창업거점 조성**을 위한 **체계 확보**

○ **필수/대표도시** : **광역 단위 창업 생태계 조성**을 위해, **권역 내 혁신주체**(창업기업, 투자사, 수요처 등)가 **집적**될 **대표도시 1곳** 지정

* 대표도시를 권역 내 창업도시로 간주 (예 충청북도 청주시, 강원특별자치도 - 춘천시 등)

** 연접한 '시 단위'를 묶어 대표도시 지정 허용 (2개 시 이내, 연접한 경우에 한해 허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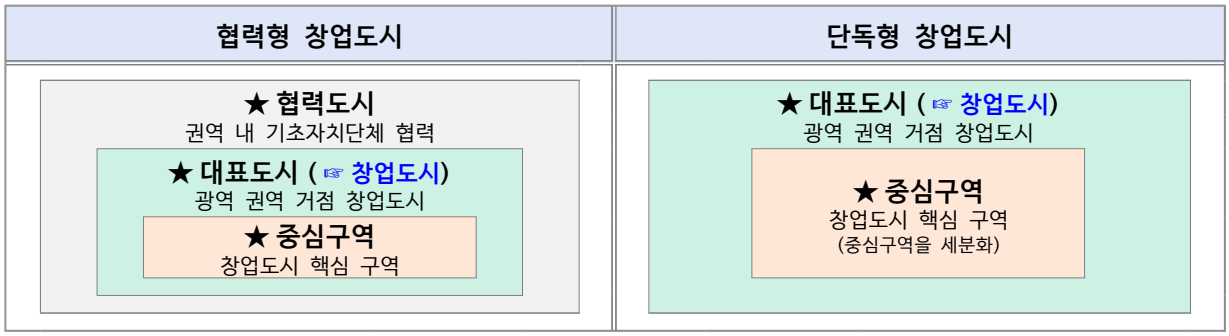
- (중심구역) **대표도시 전역**을 **창업도시**로 **조성**하되, **창업지원 기능**이 **집중 운영**될 **중심구역 1곳 이상**을 **대표도시 내 설정**

* 부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 대표도시 지정 없이 광역·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표도시(창업도시)로 간주하며, 중심구역만을 지정

○ **자율/협력도시** : **권역 내 타 기초자치단체**와의 **협력체계**(협력도시 최대 2곳)를 **구축**하여, **창업도시 조성**에 **참여 가능**

* 협력도시별 과업 참여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 설정

** 연접한 2개 '시'를 대표도시로 설정한 경우, 협력도시는 1곳 이내로 설정 가능



2 **(추진단 구성) 지역 창업기업 지원**을 위한 **혁신주체**를 **추진단**으로 구성하여, **지역 특화 창업성장** 관련 **전방위적 지원 연합체 확보**

○ **확보규모** : **기본 5개 기관,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**으로, **최소 15개 이상의 추진단** 확보 (광역자치단체*가 총괄 역할 수행)

*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 내에서 추진단장 1인을 지정

** 주요 과업항목 중 추진단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

〈 창업도시별 추진단 구성 〉

구분		참여주체	주요 역할	비고
기본	총괄	지방정부(광역)	창업도시 추진전략(방향·조직) 수립	· 컨소시엄단 구성·관리
	운영	지방중소벤처기업청	지역 현안 발굴, 중앙정부 정책 연계	·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
		창업진흥원	지역 추진전략 수립, 운영 관리·감독	· 지역별 전략 수립 보조
		창조경제혁신센터	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운영 (예산집행 등)	★ 창업도시 운영기관
		지역 엔젤투자허브	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	· 엔젤투자 활성화 협력
자율확보	사업참여	지역 내 대학	우수 기술형 창업인재 발굴·육성	· 창업인재 발굴·양성
		지역 내외 연구기관	우수 기술 보유 창업인재 발굴·육성	· 기술인재 발굴·양성
			지역 특화 기술 실증·인증·평가 지원	· 지역 특화 기술 지원
		지역 내외 AI 연구기관	지역 기술 – AI 융합 기술개발 지원	· 특화 기술 AX 지원
		사업화 유관기관	창업기업에 지역 안착형 사업화 지원	· 지역 특화 사업화 지원
		지역 수요처	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추진	· 기술 교류·협력
		지역 투자자	창업기업 투자 (TIPS 운영사 필수 포함)	· 지역 투자
		로컬 지원기관	로컬 강화 및 로컬 x 창업 협력 지원	· 지역 활성화 협력
		금융기관 지역본부	창업기업에 정부자금 외 금융 지원	· 융자·보증 등 금융지원

* 지역별 추진전략에 따라, 항목별 참여주체를 확보 (**확보 규모 상한 없음**)

** 선정된 창업도시에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 임직원 파견(1~2인 내외) 예정

〈 창업도시 주요 과업항목 〉

구분	주요 지원방향
❶ 인재 발굴·양성	· 지역 내 기술창업 인재 발굴 및 우수 지역 창업가 전환 촉진
❷ 기술지원	· 창업기업 보유 원천기술의 개선·고도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내 기술우위 확보
❸ 창업사업화	· 창업기업의 지역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여,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스케일업 촉진
❹ 투자 지원	· 지역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창업기업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촉진
❺ 개방형 혁신	· 지역 수요처(대·중견·강소·중소·공공·로컬 등)와의 기술 교류·협력 촉진
❻ 로컬 연계	·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데이터·인프라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거래·창업 활성화
❼ 글로벌 진출	· 창업도시와 유사 중점분야를 육성하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창업인재·기업 교류
❽ 네트워킹	·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간 소통·교류
❾ 주거 지원	· 창업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(대표자, 임직원) 대상 주거공간 제공
❿ 규제 해소	·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개발, 사업화 관련 규제 발굴·해소

* 10개 항목은 기본(필수)사항이며, 지역별 판단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전략 수립

3 **(지방재원 확보)** 지역 이전 창업기업 지원금(의무)과 창업도시 조성 과업수행(선택)을 위한 지방재원(광역·기초자치단체 구분 없음)을 확보

〈 창업도시 조성 과업 관련 지방재원 구분 〉

유형	항목	투입내용	비고
❶ 창업기업	지원금 (현금)	·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의 20% 지원	의무
❷ 엔젤투자허브		·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연간 운영비(2.4억원) 지원	
❸ 과업수행	1) 프로그램 운영	·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예산 지원	선택
	2) 지역사업 연계	· 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 연계	
	3) 주거공간 지원	· 지역 이전 창업기업 대상 주거공간 지원	

❶ 창업기업 지원금 : 중앙정부(중기부·창진원)에서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소재·이전 창업기업에 지역사업화 자금 지급

*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하되, 자금을 지급할 대상(창업기업)은 지방정부에서 선정

- (의무사항) 지역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을 지원 받는 지역이전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중 20%를 지방정부에서 현금 보조

*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는 의무사항에서 제외 (필요 시 지원 가능)

〈 지역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 예시 〉

구분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자기부담사업비		
	100%	70% 미만	30% 이상	-	
			소계	세부내역	
지역 성장	580,000,000원	400,000,000원	**180,000,000원**	180,000,000원	
	-	창업진흥원 지급	**창업기업 부담**	창업기업 부담	
지역 이전	580,000,000원	400,000,000원	**180,000,000원**	**36,000,000원**	144,000,000원
		창업진흥원 지급	**지방정부+창업기업**	**지방정부 지급**	창업기업 부담
비고	현금 + 현물	현금	**현금 + 현물**	현금	현금 + 현물

- (확보규모) 선정된 창업도시에서는 연간 4억원* 내외의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지원예산(현금)을 확보

〈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지원예산 확보 규모 〉

구분	확보 규모	비고
창업도시	연간 4억원 내외	※ 창업도시별 '27년 창업기업 선정규모 미정으로, 각 창업도시에 추후 배정될 창업기업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예산 변동 예정

* 창업기업 선정규모 최종 배정 시, 창업도시별 창업기업 지원예산은 하향 조정 예상

**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, 자기부담사업비의 20%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 가능

❷ 엔젤투자허브 : 창업도시 선정지역(대표·협력도시) 내 **엔젤투자허브 구축 예정**으로, **지방정부**는 **운영비 일부**를 **매년** 지원

- **(허브구축) 선정**된 **광역자치단체**의 **대표도시 내 지역 엔젤투자허브**를 **신규 구축**(중앙-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협력도시 내 설치 가능)

* 경상북도, 경상남도가 선정될 경우,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기 구축된 경산시(경북)와 창원시(경남)는 추가 구축이 불가하나, 대표·협력도시 내 타 도시에 신규 구축 가능

〈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현황 〉

구분	위치	구분	위치
충청권	대전 팁스타운	**동남권**	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(창원)
호남권	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	**대경권**	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(경산)

- **(주요역할) 엔젤투자허브 운영기관**에서 **개인투자자 매칭, 엔젤투자펀드** 등 **지역 초기투자 기반 강화** 추진

*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내 원활한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, 창업도시 추진단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포함하고, 필요 시 지역 엔젤투자허브에 대한 과업·예산을 부여

- **(운영비 확보)** 허브 1개소당 **연간 총 사업비**는 **6억원**으로 하며, **중앙정부**에서 **3.6억원**을 **지원**하고, **지방정부**가 **2.4억원**을 매칭

〈 지역 엔젤투자허브 연간 운영비 구성 〉

구분	매칭 비율	금액	비고
중앙정부	60%	3.6억원	· 매년 중앙정부(중기부)에서 운영비의 60% 지원
지방정부	40%	2.4억원	· 매년 지방정부에서 운영비의 40% 지원
합계	**100%**	**6.0억원**	-

*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엔젤투자허브에 대한 기본 운영비 지원(2.4억원) 외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·다변화 가능 (지방재원 투입분으로 전액 인정)

** 지방비는 국비와 합산한 총 사업비 범위에서 관계 법령·지침 및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·집행 가능 (인건비, 투자자·기업 지원비, 사업 운영비 등)

- **(투입시기) 지역 엔젤투자허브**는 **'27년 3월 내외**에 **신규 구축**되며, **지방정부**는 **구축 완료 이전**에 **지방재원**을 **확보·투입**

* 단,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방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, 투입 시기가 지연되거나 투입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가능

❸ 과업수행 : **창업도시 조성**을 위한 **과업 수행 전반**에 대해 **광역 자치단체** 및 **기초자치단체**(대표·협력도시 등)의 **지방재원**을 투입

* [1]프로그램 운영, [2]지역사업 연계. [3]주거공간 지원으로 유형을 분류하되,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활동에 대한 지방재원 투입 또한 인정

1) **프로그램 운영** : **중앙정부 재원**을 통해 **운영기관**의 **프로그램**에 대해 **지방재원**을 **보조**하여 **프로그램 규모·항목**을 확대

- **(인정기준) 지방정부**(광역·기초자치단체)에서 **운영기관**으로 **예산**을 **지급**하여, **운영기관**이 **집행**하는 **프로그램 비용**에 한해 인정

2) **지역사업 연계** : **각 지방정부**(광역·기초자치단체)에서 **운영 중**인 **창업지원사업**을 **창업도시 사업**에 **참여**하는 **창업기업**에 제공

- **(인정기준) 지방정부별 창업지원사업**의 **지원대상 선정** 관련 **사전 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창업도시 창업기업**을 **지원**한 **경우**에 한해 인정

〈 지역사업 연계 관련 지방재원 투입 예시 〉

계획 수립		지원대상 선별
기존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대상 중 일부를 창업도시 참여 창업기업으로 설정	▶	창업지원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, 운영기관 추천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
· ㉠ 연간 선정규모의 30%를 창업도시에 배정	▶	· ㉠ 30%를 운영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
· ㉡ 연간 선정규모 전체를 창업도시에 배정	▶	· ㉡ 창업도시 창업기업에 한해 모집 후 선정

3) **주거공간 지원** : **창업도시**(대표도시)로의 **이전**을 **희망**하는 **창업기업**의 대표자, **임직원**을 대상으로 **지역 내 주거공간**을 제공

- **(인정기준) 지방정부, 운영기관**에서 **공간**을 **확보**하고, **창업기업**에게 **직접 제공**할 수 있는 **주거공간**에 한해 인정

* ㉠ 중심구역 내 주거공간 10곳을 확보하여, 창업기업 신청 시 제공 ☞ **권고**
지역 교육·연수원, 대학 기숙사 일부를 확보하여, 창업기업 신청 시 제공 ☞ **권고**

** 지역 내 공공·임대주택의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조건 제공 또한 지방재원 투입으로 인정하되, 실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투입가능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

☞ **과업 수행**을 위한 **지방재원 투입**은 **선택사항**으로 **요건 규모**는 **없으나, 지방재원 투입 규모**에 대한 **평가** 시 **가점 부여**

☞ **각 항목별 지방재원 투입 계획**(항목, 방법, 규모 등)을 **사업계획서 내 기재**하며, **사업계획서**에 **포함되지 않은 사항**은 **가점 제외**

4 **(전담조직)** 운영기관은 **창업도시 과업 수행**을 위한 **전담조직**을 **설치**하며, **최소 7인 이상**의 **전담인력**(참여율 100%)을 확보·운영

〈 운영기관 전담인력 구성 〉

구분		주요 내용
조직 설치		·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**대표이사 직속 창업도시 전담조직**(본부·실·팀 등)을 설치
확보 규모	전담	· 참여율 100%의 **전담인력을 최소 7인 이상** 확보
	겸직	· **총괄책임자(본부장급 이상) 1인이 겸직 참여**하며, 그 외 겸직 규모 제한 없음
업무구분		· [1]창업기업 발굴·지원, [2]연계사업 관리, [3]사업비 관리로 구분하여 각 1인 이상 확보
고용형태		· 전담인력 7인 중 **정규직을 최소 3인 이상** 확보 (총괄책임자 제외)
근무경력		· 전담인력 7인 중 **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최소 3인 이상** 확보

❶ **조직설치** :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**창업도시 전담조직**(형태 무관)을 **대표이사 직속**으로 **설치**하며, **총괄책임자**를 **조직**의 **장**으로 확보

❷ **확보규모** : **총괄책임자**(본부장급 이상)는 **겸직 참여**를 **허용**하며, **전담인력**(참여율 100%)은 **최소 7인 이상**을 확보

* 총괄책임자(겸직, 1인), 전담인력(7인) 외 겸직인력의 확보투입 규모에 제한 없으나,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운영기관 내 다수 겸직인력 확보 권고
☞ 예 투자팀(TIPS 등), 사업화 지원팀(예·초·도 등), 로컬지원팀(로컬크리에이터 등) 등

❸ **업무구분** : **전담·겸직인력**의 **업무**는 **자율 구분**하되, [1]**창업기업 발굴·지원**, [2]**연계사업 관리**, [3]**사업비 관리**별 **각 1인 이상** 인력 투입

❹ **형태·경력** : **전담인력**(최소 7인 이상) 중 **최소 3인 이상**을 **정규직**으로, **최소 3인 이상**을 **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**인 **인력**을 확보

* 가급적 정규직 인력 3인을 [1]창업기업 발굴·지원, [2]연계사업 관리, [3]사업비 관리의 각 파트장으로 구성을 권고하나, 운영기관별 내부 상황에 따라 자율 확보·운영

※ **조직점검** : **전문기관**에서는 **운영기관**의 **전담조직 설치·확보** 및 **업무현황**에 대한 **별도 점검체계**를 **운영**할 **예정**으로,

- **운영기관**은 **창업도시 과업 수행**을 위한 **전담조직**을 **기준**에 따라 **반드시 설치·확보** (총괄·전문기관 협의 등을 통한 기준 완화 불가)

* 예비·초기·도약 등 타 창업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점검체계를 운영하며, 전담조직 관련 기준 미이행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조치를 통한 운영기관 변경 가능
** 운영기관에서 전담조직 설치·확보가 불가한 경우, 해당 지역은 창업도시 신청 불가

3 지원사항

1 **(직접지원)** 선정된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 **대상**의 **지역창업패키지 사업**을 공급하여 **창업기업 사업화 자금**과 **프로그램 운영비** 지원

〈 지방정부별 연간 직접지원 규모(안) 〉

구분	지원 규모
창업기업 사업화 자금	110억원 내외 (100~120억원)
프로그램 운영비	40억원 내외 (30~50억원)
합계	**150억원 내외 (130~170억원)**

* 위 직접지원 규모(안)은 예시로, 매년 예산 확정 후 도시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조정 예정

❶ 창업기업 :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수요**에 따라 **지역 소재·이전 창업기업**을 **선정**하며, **선정**된 **창업기업**에 **지역사업화 자금** 지원

- **(선정방법) 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별 **배정**된 **규모**에 따라, [1]**자율선정**과 [2]**공모선정**으로 **구분**하여 **창업기업**을 선정

구분	주요 내용
자율 선정	· **지방정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규모 중 일부를 지역의 수요에 따라 창업기업을 선정** ☞ 예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, TIPS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, 지역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창업기업 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등
공모 선정	· **자율선정 이후 잔여된 창업기업 선정규모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대국민 모집공고를 통해,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창업기업 선정** ☞ 공모 시에도 평가분과 구성, 분과별 선정규모 등 지방정부가 평가를 자율 운영

- **(지원규모) 지역**에 **소재**하거나, **이전**을 **희망**하는 **창업기업**을 **대상**으로 **연간 최대 6억원**의 **지역사업화 자금** 지원

구분	지원대상	정부지원사업비 규모	
지역 성장	· 대표·협력도시 내 본사가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)	신산업	· 최대 4억원 (평균 3.5억원)
		일반	· 최대 3억원 (평균 2.5억원)
지역 이전	· 대표·협력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)	신산업	· 최대 6억원 (평균 5억원)
		일반	· 최대 5억원 (평균 4억원)

*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의 세부규모(금액, 기업 수, 지역별 차등 등)는 연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선정된 창업도시에 개별 안내 예정

❷ 운영기관 : **지역별 추진전략** 관련 **세부과업 수행**(프로그램)을 위한 **운영기관**의 **프로그램 운영비용** 지원

*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에서 검토·승인하며,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 추진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위탁 및 비용 지급 가능

2 **(연계지원) 중앙정부**(중소벤처기업부 등)의 **창업·로컬지원사업**을 각 **지역**에 **공급**하여, **지역별 창업 생태계**와 **정주 여건**을 **동시** 강화

○ **연계방안** : 각 연계**사업별 창업도시 우대제도**를 **운영**하며, **지역별 연계사업** 관련 **수요**를 기반으로 **각 사업**에 대한 **신청·유치** 지원

〈 지방정부 대상 주요 연계사업 현황(예시) 〉

항목 (타 부처)		사업개요
기술 개발	TIPS 프로그램	· TIPS 운영사가 先투자한 창업기업에 R&D 자금 최대 8억원 지원 ☞ 예 TIPS 연계를 위한 Pre-TIPS 선정 시 창업도시 소재기업 우대
사업화	창업중심대학	· 지역 내, 대학발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.5억원 지원 ☞ 예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기업 선정 시, 창업도시 소재 기업 우대(가점 등)
투자	지역성장펀드	·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(모펀드) 조성 후 자펀드에 출자 ☞ 예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에 창업도시 특화펀드(자펀드) 조성
	엔젤투자허브	·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(엔젤투자허브) 확대 ☞ 예 엔젤투자허브 신규 설치 시, 창업도시 내 설치 우선 검토
	KVIC 지역 투자센터	· 지역의 벤처·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(한국벤처투자) 확대 ☞ 예 KVIC 지역 투자센터 신규 설치 시, 창업도시 내 설치 우선 검토
개방형 혁신	딥테크 밸류업	· 정부에서 선별한 우수 창업기업과 국내 대·중견기업의 협업 지원 ☞ 예 딥테크 밸류업 지원대상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 포함
글로벌	글로벌 창업허브	·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허브 (서울 홍대 인근) ☞ 예 창업도시 창업기업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제공
로컬	원도심 RE:CORE (국토부, 문체부)	· 원도심 RE:CORE 사업에 창업도시 연계 시 가점(3점) 제공 ☞ RE:CORE 선정 시, 중기부 로컬 사업(로컬테마상권 등) 추가 우대
인프라	스타트업파크	· 지역 창업 혁신주체 간 소통·교류를 위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구축 ☞ 예 신규 스타트업파크 선정 시, 창업도시 우대
	창업자 마을 (재경부)	· 재경부 국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(창업자 마을 등) 조성 지원 ☞ 예 창업자 마을 공급 및 주거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
규제	규제자유특구	·신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규제특례 실증을 실시하고 임시허가 부여 및 규제 정비를 촉진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☞ 예 창업도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후보과제를 신청 시 우대(가점 2%)
네트워킹	지역창업 페스티벌	· 창업 혁신주체의 소통·교류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☞ 창업도시에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비용(3억원 내외) 지원 예정

* 연계사업 목록은 예산 편성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☞ **연계 사업별 연계 방안** 및 **규모**는 당해연도 사업별 **사업계획 확정 시 협의**를 통해 **확정** 예정

☞ **각 연계사업별 세부 연계방안**(우대제도 등) 및 **규모**는 **선정**된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를 **대상**으로 **별도 안내** 예정

4 과업 개요

1 **(지방정부)** 광역자치단체는 **창업도시 조성**의 **총괄**로서, **창업도시 조성 전략**을 **수립**하고, **추진체계**의 **구성** 및 **참여기관 과업**을 관리

❶ **추진전략 수립** : **지역별 창업도시 조성**을 위한 **컨셉·슬로건, 추진목표, 중점분야, 중심구역** 등 **창업도시 조성 전략(방향)** 수립

❷ **사업계획 승인·관리** : **운영기관**에 **추진전략** 기반 **연간 사업계획 수립방향**을 **안내**하고, **운영기관**에서 **수립**한 **사업계획**을 **검토·승인**

* 사업계획의 최초 검토·승인 이후 연간 사업계획 수행 현황을 지속 점검·관리

❸ **추진단 구성·관리** : **지역 창업기업**의 **효과적 지원**을 위해, **지역 대학, 연구기관, 투자사** 등 **과업**에 **참여**할 **지역기관 구성·관리**

2 **(운영기관)** **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**는 **창업도시 조성 과업 전반**의 **운영기관**으로, **세부계획 수립·운영** 및 **창업기업 선정·관리**

❶ **사업계획 수립·운영** :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추진전략 실현**을 위한 **연간 사업계획**을 **수립**하며, 추진단 등 **세부과업**을 **총괄 관리**

* 연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정부지원사업비(운영비)를 집행하며, 지방정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불인정 (반드시 지방정부 승인 이후 사업계획 확정·수행)

❷ **창업기업 지원·관리** : **지역 소재·이전 (예비)창업기업**의 **발굴**(창업기업 Pool) 및 **자금**을 **지원**할 **창업기업 모집·선정·관리**

❸ **중앙정부 대응** : **총괄·전문기관**에서 **사업운영**을 위해 **요청**하는 **사항**에 대한 대응 (중앙정부는 운영기관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)

3 **(추진단)** **추진단**은 **창업도시 조성**의 **핵심적 참여기관**으로, **기관별 전문성**을 **기반**으로 **창업도시 조성 전략**을 위한 **개별 역할** 수행

* 예 대학 : 교원·학생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창업준비·실행 교육
 연구기관 : 중점분야별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시험·실증·평가 등 기술 지원 등

☞ **과업 세부사항은 「별첨5.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」를 참고**

5 평가·선정 개요

□ **(평가절차) 2단계**(서류평가 → 현장평가)**의 평가**를 통해 **사업**에 **신청**한 **광역자치단체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**과 **가능성**을 **비교 검증**

〈 **창업도시 신규 선정평가 절차** 〉

[1단계] 서류평가	▶	[2단계] 현장평가	▶	심의·확정
제출서류 기반 역량 비교 및 착안사항 발굴		평가단의 각 지역 방문을 통한 광역자치단체별 발표 및 현장 실사		평가 과정·결과의 심의 및 선정 확정

❶ 서류평가 : **각 광역자치단체**의 **제출서류**(사업계획서 등)를 **기반**으로, **지역 간 역량**을 **비교**하고 **현장검증**을 위한 **착안사항**을 중점 발굴

* 서류평가를 통해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숙지 및 타 지역 비교를 통한 현장 확인 필요 사항(착안사항)을 발굴할 예정으로, 서류평가를 통한 별도 탈락 없이 사업에 신청한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증 시행

❷ 현장평가 : **평가단**의 **각 지역 방문**을 통해, **광역자치단체별 발표, 질의응답** 후 **주요 현장**(핵심구역, 추진단 시설 등)을 실사

- **(운영방법)** '**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**(14P)'에 따라, **지역별 현장 평가**의 **평가일, 장소**와 **세부일정**을 **수립**하여 **사전 제출**

〈 **현장평가 세부일정 (예시)** 〉

일정		추진사항	광역자치단체의 준비사항
10:45 ~ 11:00	15분	사전안내	· 발표평가 장소 설정 및 평가 준비
11:00 ~ 11:50	50분	발표평가	
11:50 ~ 13:00	-	중식	· 평가단은 별도 장소에서 중식 예정
13:00 ~ 15:00	120분	현장실사	· 현장실사 지역, 장소 등 일정, 동선계획 수립

- **(발표평가) 지역별 50분 내**에서 **발표평가**를 **시행**하며, **광역자치단체**의 **발표** 후 **평가단 질의응답** 시행

* 발표(발표자 최대 2인)는 최대 20분 내로 진행하며, 발표 종료 후 총 시간 50분 내에서 질의응답 진행

- **(현장실사) 광역자치단체**에서 **수립**한 **추진전략** 관련 **대표도시 내 핵심구역, 추진단(기관) 시설** 등에 **평가단 방문** 및 **실사**

* 평가단이 방문할 구역, 장소 등 전체 일정·동선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며, 평가단은 광역자치단체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별도 차량(미니버스 등)으로 이동

〈 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 〉

◈ **(수립개요)**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추진전략과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 역량, 가능성을 평가단에게 가장 효과·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평가 장소, 동선, 일정 등 계획을 수립

◈ **(수립내용)** [1]평가일, [2]발표평가 장소, [3]현장실사 지역·기관, [4]이동동선 계획 수립

1) **평가일** : 대상별 정해진 기간 내에서 4지망까지 현장평가 희망일을 지정

신청대상 (가나다 순)	평가기간	비고
· [1]강원특별자치도, [2]경상남도, [3]경상북도, [4]부산광역시, [5]세종특별자치시, [6]전남광주통합특별시, [7]전북특별자치도, [8]제주특별자치도, [9]충청남도, [10]충청북도	'26년 12월 14일 ~ '26년 12월 31일	평가기간 내 평가희망일을 4개 이내 지정

2) **발표평가 장소** : 대표도시 또는 협력도시 내 발표평가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, 스크린, 음향, 평가단(8인)의 책상과 좌석, 배석자 좌석* 등 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

* 지역별 배석자는 8인으로 제한하며, 중앙정부(최대 4인)의 배석 좌석을 함께 마련

3) **현장실사 장소** : 지역별 현장실사 장소를 2곳 이내로 설정하며, 현장실사 장소 내에서의 현장 설명자(1인) 지정, 현장실사 장소 내 세부 이동동선 계획을 수립 (총 2시간 이내)

* 현장실사 장소는 제한 없으며, 추진전략 관련 연관성과 중요도가 높은 장소를 지역별 자율 설정

** 현장실사 장소별 현장 설명자는 장소마다 변경 가능

*** 가급적 대학, 연구기관 등 핵심 참여기관(추진단)을 위주로 방문하며, 필요 시 야외 실사도 가능

4) **세부동선** : 현장실사 장소 내 동선과 현장실사 장소 간 이동 동선 계획을 수립

◈ **(제출방법)** 「별첨4. 창업도시 평가계획서」 작성 후 사업 신청 전 이메일 제출 (지방정부 공문 첨부)

○ **(제출처) K-StartupCity@kised.or.kr (044-410-1890, 창업진흥원 김민영 주임)**

○ **(제출기한) 2026년 11월 4일(수), 15:00까지 제출** **※ 미제출 시 평가일정 임의 지정**

◈ **유의사항**

○ 현장평가 계획은 제출 후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의 안내에 따라 1회 이내에서 변경 가능

○ 동일한 평가일을 지정한 광역자치단체 발생 시, 이메일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 부여

* 지역별 현장평가일은 신청·접수 완료 후 창업진흥원에서 각 지역에 별도 안내

○ 현장실사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, 첫 번째 장소 내 실사 시간, 두 번째 실사 장소 이동시간, 두 번째 장소 내 실사 기간의 2시간 초과 불가 (2시간 초과 시 즉시 평가 종료)

* 평가단은 13시까지 첫 번째 평가장소에 도착 예정이며, 평가단의 첫 번째 평가장소 도착 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 현장실사 종료 필요

❸ 심의·확정 : 평가 과정의 공정·타당성 여부 검증 및 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한 최종 심의를 통해, 창업도시 선정을 확정

* 평가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·심의는 진행하지 않음

** 심의 과정에서 선정대상임에도 창업도시 조성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확인되거나, 탈락대상임에도 창업도시 조성 역량이 우수한 지역이 있을 경우 선정규모 조정 가능

□ **(평가항목)** 창업도시 검증지표를 기반으로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, 가능성을 정량·정성으로 구분하여 비교·검증

〈 '26년 창업도시 검증 세부지표(안) 〉

구분	7대 검증항목	세부항목	20개 세부검증지표		배점
평가 사항	창업성장 지원여건	창업성장	정량	① 최근 3년 신규 창업 규모 및 지역 정착 비중	3점
			정성	② 지역 사업화 측면의 성장 지원 계획의 구체성	12점
		전문가 확보 규모	정량	③ 창업도시 참여 기술·사업화 전문가 확보 규모	2점
			정성	④ 수요 기반 전문가 확보·지원 방안의 구체성	2점
	금융지원 여건 및 활성화 수준	금융	정량	⑤ 최근 3년 지역 투자자의 지역 투자 규모	2점
			정성	⑥ 투자지원 및 지역 투자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	6점
	특화산업 창업역량	기술 제품화	정량	⑦ 특화산업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비중·생존율	2점
			정성	⑧ 특화산업형 신규 창업·성장지원 방안의 구체성	11점
	지방정부의 의지·방향	자원 투입	정량	⑨ 지역 자원(예산·프로그램) 투입 규모	5점
			정성	⑩ 지역 자원의 중장기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	10점
		조직 구성	정량	⑪ 창업도시 추진단 참여기관(업) 규모	2점
			정성	⑫ 창업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타당성	10점
	대·중견 협업 활성화 수준	개방형 혁신	정량	⑬ 지역 내 개방형 혁신(대·중견·공공) 지원 규모	2점
			정성	⑭ 수요기업 협력·교류 지원 계획의 구체성	4점
	기술인재 창업 여건	기술 인력 수급	정량	⑮ 지역 연구기관(대학·연구소) 연구자 창업 규모	3점
			정성	⑯ 기술인재 확보·수급 방안의 실현 가능성	11점
	창업거점 조성 환경	거점 조성	정량	⑰ 창업도시 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 규모	2점
			정성	⑱ 창업거점 조성 계획의 구체성·실현 가능성	5점
		주거 환경	정량	⑲ 신규·이전 기업 주거지원 계획(공간) 규모	2점
			정성	⑳ 창업기업 수요 기반 주거지원 계획의 실효성	4점
	소계				**100점**
우대 사항 (가점)	-	-	· 중앙정부 정책(사업) 연계 규모		5점
			·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예산 투입 규모		3점
			·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인프라 연계 규모		2점
	소계 (최대)				**5점**
	총계 (최대)				**105점**

* 다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대 5점으로 가점 제한

〈 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 〉

◈ **(정량평가)**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에서 세부검증지표별 정량수치와 증빙을 제출*하고, 경쟁 지역 간 규모를 비교**하여 점수 배정 (전체 배점의 25%)

* 「별첨4. 창업도시 평가계획서」 내 「2 정량 규모 현황」에 기재

** 예 배점 5점일 경우 ☞ 1위 5점, 2위 3점, 3위 2점, 그 외 1점 및 최하위권은 0점

◈ **(정성평가)** 사업계획서, 현장실사(발표·질의응답 등)를 기반으로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별 사업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 등 비교 (전체 배점의 75%)

◈ **(우대·가점)** 중앙정부 정책(사업)을 과업에 투입(연계)하거나,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인프라, 예산 투입 규모를 비교하여 가점 부여 (최대 5점, 정량평가와 점수 배정 방안 동일)

6 신청 방법

□ **(신청기간)** ’26년 10월 23일(금) ~ 11월 30일(월), 15:00까지

* 신청기간 종료 후 별도 신청유예시간 없으며, 신청기간 내 ‘제출완료’(접수증 발급)되지 않은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

□ **(제출서류)** 1)사업신청서(온라인), 2)공문(광역자치단체), 3)지방정부 추진전략(HWP), 4)사업계획서(HWP), 5)증빙자료(HWP), 6)평가계획서(HWP)

〈 제출서류 현황 〉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제출 방법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colspan="3">사업신청서</td><td colspan="2">별도 파일 제출 없음</td><td>온라인 입력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공문</td><td colspan="2">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의 사업신청 공문 첨부</td><td rowspan="7">온라인 신청 절차 내
온라인 업로드
(온라인 신청 최종 단계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지방정부 추진전략</td><td colspan="2">[별첨1] 양식(HWP) 내 기재 (작성항목 준수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운영기관 사업계획서</td><td colspan="2">[별첨2] 양식(HWP) 내 기재 (작성항목 준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증빙자료</td><td rowspan="3">요건</td><td>대표·협력</td><td>대표·협력도시 확보 관련 증빙(자율)</td><td rowspan="4">증빙서류 양식 내 첨부
(별첨3)</td></tr>
<tr><td>지방재원</td><td>지방재원 확보 관련 증빙(자율)</td></tr>
<tr><td>전담조직</td><td>재직증명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타 사항</td><td>추진단 확보 등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(자율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평가계획서</td><td colspan="2">[별첨4] 양식(HWP) 내 기재 (작성항목 준수)</td><td>별도·사전 제출</td></tr>
</table>

* 자율 첨부하는 증빙은 공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한해 인정

** 업로드하는 파일의 용량은 100MB 이하로 하며, 증빙 미제출 시 평가·가점 제외 가능

*** 기타 지역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자율 첨부 (증빙 첨부 제한 없음)

□ **(신청방법)** K-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(별첨된 신청·접수 매뉴얼 참고)

◈ 온라인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, 접수 마감일 2~3일 이전에 운영기관(창조경제혁신센터) 총괄책임자(본부장급)의 K-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의 사전 진행 권고 (제출완료 후 접수마감 전까지 상시 수정 가능)

◈ **온라인 신청은 운영기관(창조경제혁신센터)에서 시행하며, 신청서류 업로드 시, 반드시 신청 공문은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 명의의 공문을 첨부**

◈ K-스타트업 내 사업 신청 페이지는 신청대상(10개 광역자치단체)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해 접속 가능하며, 별첨된 신청·접수 매뉴얼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 신청

* 사업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,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에 사전 문의

◈ 운영기관은 총괄책임자(본부장급)의 계정으로 사업에 신청

◈ K-스타트업 신규 가입 시, 서울신용평가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,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(※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)

7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**'전남광주통합특별시'**에서 **신청**하는 경우, **기존 광주광역시**(북구, 동구, 서구, 남구, 광산구)와 **나주시**를 **제외**한 **지역 내 대표도시**(창업도시)와 **중심구역, 협력도시**를 **조성·확보**하는 **경우**에 **한해 신청 가능**하며, **운영기관**은 **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**로 **지정**

*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광주광역시, 나주시를 담당하며,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판단에 따라 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통합 운영 검토 가능 (중앙정부 협의 필요)

○ **사업 온라인 신청**은 **반드시 운영기관**(창조경제혁신센터) 내 **총괄책임자**(본부장급 이상)의 **K-스타트업 계정**으로 진행

○ **사업 온라인 신청** 시, **'제출공문'**은 **사업**에 **신청**하는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사업 신청 공문**으로 **제출**하며,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공문**이 **누락**된 경우 **접수 취소** 및 **평가대상**에서 **제외**

○ **신청대상**(광역자치단체, 운영기관)에서 **공고문** 및 **규정** 등에 **위배**되는 **행위**를 하거나, **운영기관**에서 **제출**한 **사업계획서** 및 **증빙서류**가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사전 승인**을 **득하지 않은 경우, 평가대상 제외** 및 **탈락처리** 되며, **추후 확인 시**에도 **선정·협약 취소** 가능

○ **신청요건** 관련 **증빙**을 **누락**한 경우, **접수 취소** 및 **평가대상**에서 **제외**되며, **가점** 관련 **증빙**을 **누락**한 경우 **가점 대상**에서 제외

○ **신청요건** 및 **가점** 관련 **증빙서류**에 대해 **추가 확인**이 **필요**한 경우 **전문기관**(창업진흥원)에서 **보완**을 **요청**할 수 있으며, **보완**에 **불응**하거나 **기타 문제사항**이 **발생**될 경우 **접수 취소** 및 **평가대상** 및 **가점 대상**에서 제외

○ **신청 기간 종료** 후 **신청 유예시간**은 **없으며, 신청기간 내 '제출완료'**(접수증 발급)된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를 **평가대상**으로 **간주**

○ **신청서류**는 **'제출완료'** 시에도 **신청 기간 종료** 시까지 **수정·변경 가능**하나, **신청 기간**이 **종료**된 **후**에는 **변경 불가**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○ **사업**에 **신청**한 **모든 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를 **대상**으로 **서류평가** 및 **현장평가**의 **시행 예정**으로, **서류평가 결과**에 **관계 없이 현장평가**의 **사전 준비** 권고

○ **지방정부**에서 **사전 제출**한 **평가계획서**를 **기반**으로 **현장평가일**을 **배정**하며,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는 **최대 4순위**까지 **희망 평가일**을 **평가계획서**에 **기재**하여 **제출**

○ **2개 이상**의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가 **동일**한 **현장평가일**을 **희망**할 경우, **이메일 접수 시점**을 **기준**으로 **먼저 평가계획서**를 **제출**한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수요**를 기준으로 **평가일**을 **우선 배정**

* 제출 시점이 늦은 지방정부의 경우, 4지망 외 일정을 현장평가일로 임의 지정 가능

○ **현장평가** 관련 **발표평가**의 **발표자**, **현장실사**의 **현장 안내자**는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에서 **자율 지정**하나, **발표평가**의 **발표자**의 경우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 및 **운영기관**(창조경제혁신센터)에 **소속되지 않은 인력**이 **진행**할 경우, 평가 관련 **불이익 발생** 가능

* 발표평가의 발표자는 지방정부, 운영기관 담당인력으로 한정하며, 최대 2인으로 구성
(예 전반적 추진전략 - 지방정부 담당자 → 창업지원 세부방안 - 운영기관 담당자)

○ **발표시간**은 **최대 20분 이내**이며, **발표**를 **20분 미만**으로 **진행**할 경우, **총 발표평가 시간**(50분) **내**에서 **잔여 시간**을 **질의응답**으로 **활용** 가능 (발표시간은 20분 초과 불가)

○ **발표평가**를 위한 **발표자료**는 **현장평가일**까지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에서 **자율 제작**하나, **사업계획서 내 작성항목** 중 **누락**되는 **항목**이 있을 경우, 평가 관련 **불이익 발생** 가능

○ **전문기관**(창업진흥원)에서 **배정**한 **현장평가일**은 변경 불가

○ **발표평가 시**에는 **8인**으로 **배석자**를 **제한**하며, **발표평가장 내 평가단**(8인)의 **좌석**과 **중앙정부**(최대 4인)의 **좌석**을 함께 마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○ **선정**된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, **운영기관**(창조경제혁신센터)은 「**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**」, 「**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**」, 「**사업 세부관리기준**」, **창업진흥원**, **운영기관**의 **안내사항**을 **준수**하며, **미숙지** 시 **불이익** 발생 가능

○ **선정 이후**라도 **신청자격·요건**의 **불충족 사항**이나 **추진전략** 및 **사업계획**의 **허위사실**이 **확인**되는 경우 **선정·협약**의 **취소**, **정부지원사업비**의 **환수** 및 **참여제한**(운영기관) 등의 **제재** 가능

○ **운영기관**은 **지방정부**의 **추진전략**에 **기반**한 **사업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승인**을 **득**하며,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에서 **승인**한 **사업계획**에 **한해 운영기관**에 **지급**된 **정부지원사업비 집행** 가능

*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에서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,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사업비는 환수 처리하며, 운영기관에 대한 제재(참여제한 등) 부여

○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, **운영기관**은 **사업 신청** 시 **제출**한 **추진전략**, **사업계획**에 따라 **지방재원**을 **투입·집행**하며, **지방재원**을 **투입**하지 **않은 경우 요건 미이행**으로 **간주**하여 **협약 중단·취소** 가능

○ **총괄기관**(중소벤처기업부), **전문기관**(창업진흥원)의 **점검***(수시·최종 등) **결과**에 따라, **협약 중단**, **정부지원사업비 환수** 등 **제재** 가능

* 창업도시 대상 점검 시, 지방청의 의견(점검 필요 사항)을 사전 확인하고, 총괄기관(중소벤처기업부)과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에서 중간·수시·최종점검 시행 예정

○ 사업 선정 이후, **운영기관**이 **총괄기관**(중소벤처기업부)의 **창업지원사업**에 대해 **전문기관**(창업진흥원)으로부터 **참여제한 처분**을 받는 경우, **총괄기관**(중소벤처기업부)과 **전문기관**(창업진흥원), **지방정부**(광역자치단체)의 **협의**를 통해 **운영기관 변경** 가능

○ **운영기관**에 대해 **정부지원사업비 횡령·편취**, **용도 외 집행** 등으로 인한 **환수 발생** 시, **채권추심** 등의 **조치** 가능

8 추진일정 및 문의처

□ 추진일정(안)

항목	주요내용	일정(안)
모집공고	· 창업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지방정부(광역자치단체)를 대상으로 K-스타트업 누리집 내 모집공고 게시	10월 23일
▼		
사업설명회	·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, 운영기관 및 추진단 대상 전국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	10월 28일
▼		
지방정부 접수 마감	· 창업도시 참여 희망 지방정부별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	11월 30일
▼		
서류 검증	·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추진전략,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를 통한 비교·검증(평가) 시행	12월
▼		
현장 검증	· 창업도시 참여 희망 지방정부 전체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시행하여, 현장확인을 통한 비교·검증(평가) 시행	12월
▼		
선정확정	· 지방정부별 서류·현장 검증 결과에 대한 종합 심의를 통해, 신규 창업도시 선정 확정	1월
▼		
전략 발표회 개최	· 신규 지정된 창업도시별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 (기존 4개 창업도시의 연간 성과 발표 병행)	2월

* 창업도시 모집·평가 등 추진현황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

** 전략발표회는 신규 선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

□ 문의처

○ 시스템 문의 : (국번없이) 1357

○ 사업신청 문의 :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

구분	소속	담당자	문의처
총괄	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	주동훈 팀장	044-410-1925
선정평가	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	구보창 대리	044-410-1889
사업기획	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	곽혜미 대리	044-410-1892
평가계획서 접수	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	김민영 주임	044-410-1890